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60
----------	-------

발의연월일 : 2025. 8. 20.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송옥주
이병진 · 허성무 · 강준현
복기왕 · 서영교 · 위성곤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 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

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수행”을 “수행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및 대여.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

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사. 그 밖에 적립금의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1호나목·다목·사목, 제2호가목의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u>수행</u>) ① (생 략)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u>수행</u> 및 <u>적립금 운용방법 등</u>) ① (현행 과 같음)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 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 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u>	<삭 제>
<신 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u>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적 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가입자 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 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1. <u>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 는 예금·적금</u>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
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
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
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매매 및
대여. 이 경우 증권(「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
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
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
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
야 한다.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채신관
서가 취급하는 예금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
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
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
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
는 예탁금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
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
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
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사. 그 밖에 적립금의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
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
방법

2.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
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

<신 설>

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
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
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
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
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
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
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1호나
목·다목·사목, 제2호가목의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
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